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52
----------	-----

2019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월 30일, 문장길 의원 외 17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9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동성을 유지·보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총비용 ≙ 4,468,700천원(연평균 893,7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조례안 제14조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소계(b)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 총 비용(b-a)		746,700	813,900	887,100	967,000	1,054,000	4,468,700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8 ~ 2019. 2. 1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수정동의

- 입법예정 조례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예산규모내에서 타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수용 가능함.
- 단, 유사한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 필요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운전면허를 자진 납부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비례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정지시력이 30대 자신들의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야간시력의 경우 75세 운전자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의 빛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령운전자 중 74.5%가 '노화로 인한 기능 손상과 인지능력 저하'를 이유로 운전중단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²⁾

1) 정연식의 2명,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2) 이원영외 2명,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도로교통공단, 2015

○ 이러한 고령운전자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취지에는 고령운전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이 없어 그간 추진실적이 그간 미진했던 실정임

○ 그에 반해 부산시는 지난해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각종 상업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과 추첨을 통해 10만원이 충전된 후불교통카드를 지급한 결과,

전체 반납자의 절반에 가까운 5,280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이는 2017년 466건에 비해 11배가 늘어난 실적이며 이와 비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6% 감소³⁾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 조례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원범위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예산 및 대상,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2019년 1월 31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내용⁴⁾과 일부

3) 부산시 보도자료, 어르신! 안전을 위해 운전 졸업하시고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2019. 2. 18

중복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